

죄 전담 검사 또는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도록 함.

아. 진술녹화제의 적용대상 확대(법 제21조의3)

의무적 진술녹화의 대상자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함.

자.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의무 강화(법 제22조의3)

(1) 현재는 13세 미만의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의 경우에만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을 의무화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법원과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동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2) 앞으로는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에 있어 신청이 있는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6년10월27일

국무총리 한명숙

국무위원
행정자치부장 이윤섭

●법률 제8060호

放送法 일부개정법률

放送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放送法”을 “방송법”으로 한다.

제2조제3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공중선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
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
가를 받은 자

제2조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보도”라 함은 국내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
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
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제8조제6항중 “綜合有線放送事業者·放送채널使用事業者 및 傳送網事業者는 市場占有率”을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방송분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종교단체
4. 정당
5.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⑭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1개를 초과하여 방송국을 소유할 수 없다.

제9조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중전의 제11항)중 “第10項”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재원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당해 사업자의 최대액출자자(당해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9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최대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방송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방송위원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2.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3. 시청자의 권익보호

4.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최대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방송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승인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 제9조제1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2항제11호중 “制裁措置”를 “제재조치와 재심절차”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부여

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에 대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당해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③분쟁의 조정은 분쟁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며 조정의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④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8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해외한국어방송에 대한 지원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기금의 일부를 방송의 공공성·공익

성 제고와 방송진흥 및 시청자복지를 위하여 용자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 할 수 있다.

제69조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6항 내지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 이외에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의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제7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며,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시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여 어린이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8조제6항중 “요건·節次”를 “요건·절차·유효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 다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재송신할 수 있다. 제83조제2항중 “放送프로그램”을 “방송프로그램(예고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8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조(자체심의) 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방송권역 청취자가 참여하는 방송평가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第33條의 審議規程”을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중 “訂正·중지”를 “정정·수정 또는 중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중 “放送編成責任者 또는 해당放送프로그램”을 “방송편성책임자·해당방송프로그램”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5항)중 “第4項”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심의규정 등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주의 또는 경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는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 출연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방송위원회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음란, 퇴폐 및 폭력 등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복용·투약·흡입 및 음주 후 방송출연 등으로 인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3.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106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제108조제1항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

2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1호중 “第74條第1項”을 “제7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7호중 “第100條第2項”을 “제100조제4항”으로 한다.

2의2. 제1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6의2.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출연자에 대한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제10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 ①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②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과징금을 부과받은 당해 방송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
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 1. 분할되는 법인
-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법인

④과징금을 부과받은 방송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부과일에 해산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
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 2.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법인

⑤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과징금의 징수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8
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동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의 유효기간에 관
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7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
여 각각 지상파방송 및 외국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에 대한 재송
신 승인을 얻은 자는 제7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시행
당시에 각각 다시 재송신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방송법 개정이유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방송분
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며, 해외한국어방송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대상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에
반드시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도록 하며, 음란·폭력
등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에 의한 출연제한 및 과

징급 처분의 법적근거 마련하는 등 방송심의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관한 규정(법 제2조제3호마목, 제8조제13항·제14항, 제9조제11항 신설, 법 제16조, 법 제69조제9항 신설)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그 허가대상·소유제한·허가절차·허가유효기간 및 편성비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나.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등의 제한(법 제8조제6항)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과도한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겸영이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이내로 제한함.

다. 주식취득을 통한 방송사업자의 최대액출자자 등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승인 등(법 제15조의2 신설)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

선방송사업자의 최대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라. 방송분쟁조정위원회(법 제35조의3 신설)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상호간에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에 방송분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방송분쟁위원회에서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함.

마. 방송발전기금의 용도(법 제38조제1항제11호의2 및 제38조제2항 신설)

방송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한국어방송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고, 방송발전기금의 일부를 방송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제고와 방송진흥 및 시청자복지를 위한 투·융자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바. 어린이 대상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에 방송광고자막 표기 의무화(법 제73조제1항)

방송사업자는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시간에 반드시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여 어린이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함.

사. 방송심의제도의 개선(법 제10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방송심의규정의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사업자는 해당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음란·퇴폐 및 폭력 등에 관한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6년10월27일

국 무 총 리 한 명 숙

국 무 위 원 김 명 곤
문화관광부 장 관

●법률 제8061호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영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186호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등기 등)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제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인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의 설치일에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영화진흥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영화진흥위원회가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영화진흥공사의 명의를 영화진흥위원회의 명의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화진흥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6186호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2000. 1. 21. 공포) 부칙 제2조에서 종전의 영화진흥공사에 속하여 있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영화진흥위원회에 포괄승계하도록 하였으나, 재산에 관한 등기부 등의 명의에 있어 동일성 간주규정이 없어